인터넷 명예훼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1
1.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4
1.1.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4
1.1.1.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4
1.1.2.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등 7
1.2. 관련 법령의 개관 8
1.2.1. 관련 법령의 개관 8
2. 정보의 삭제요청 등 10
2.1.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10
2.1.1.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10
2.2. 임의의 임시조치 11
2.2.1. 임의의 임시조치 11
3.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12
3.1. 분쟁조정신청 12
3.1.1. 조정신청 등 12
3.1.2. 조정신청의 접수 등 14
3.2. 조정전 합의 16
3.2.1. 조정전 합의권고 등 16
3.3. 분쟁의 조정 16
3.3.1. 조정의 진행 등 16
3.3.2. 조정안의 작성과 조정의 성립 등 20
4.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및 소의 제기 23
4.1.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23
4.1.1.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23
4.2. 민 · 형사상 소(訴)의 제기 27
4.2.1. 고소 · 고발 27
4.2.2. 손해배상의 청구 29

1.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1.1.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1.1.1.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와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게재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전기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하여지는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게시판 명예훼손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의의와 사례 등

“명예”의 개념

> 명예의 개념은 객관적 명예개념과 주관적 명예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명예개념은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주관적 명예개념은 명예감정을 의미합니다.

▶ 내적 명예는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지니는 내부적 가치 그 자체이며,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 반면에 외적 명예는 한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이에 의하면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바로 명예훼손죄에서의 행위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4쪽]

인터넷 명예훼손의 의의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또는 트위터 등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게시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출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3쪽]

▪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OO 시민 또는 OO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참고]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加害)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전기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출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5쪽].

√ "사실"이란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장래의 사건은 사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출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5쪽].

√ "적시"란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사회나 외부에 표시·주장·발설·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출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6쪽].

√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참고].

√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합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참고].

인터넷 명예훼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출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8쪽].

▪ 비방: 공개적으로 타인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행위

> ▶ 사례
>
> OO 카페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정리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심한 욕설과 함께 실명을 거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쇼핑몰을 정리하면서 환불을 다 안해줬다고 하면서……. 공개글로 올려놓은 상태라 저를 모르는 분들에게도 저는 마치 사기꾼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 폭로: 타인과 관련된 부정이나 비밀과 관련하여 특정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 사례
>
> 결혼하기 전부터 직장에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남자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근무시간에 메신저로 사적인 얘기도 하고, 공적인 얘기도 하면서 지냈는데 며칠 전 직장동료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자상사와 제가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을 저장하여 복사한 후 회사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와 상사의 관계를 부도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사생활 침해: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 ▶ 사례
>
> 헤어진 옛 애인이 저의 사생활 및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 이를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제 사생활을(제가 OO 와 잤다는 등)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과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 OO 카페’ 게시판에 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 모욕죄 알아보기

Q.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며, 사이버 모욕죄를 범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사이버 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성립합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병원의 행정실장이었던 피고인이 병원 간호과장 및 간호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한 사안에서 법원은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은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수원지법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Q.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은 같습니다. 다만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한다는 점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이버 모욕죄와 다릅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Q. 인터넷에서 상대방을 향해 무례하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면 언제나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A. 사이버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예를 들면 A가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B와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법원은 A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B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또한 A가 중학교 교무실에서 학생 등이 있는 자리에서 교사에게 큰 소리로"저 아이는 지아비가 양아치니까 아들도 양아치 노릇을 한다. 내가 경찰서에 처넣을거야."라고 말한 사안에서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1.1.2.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등

인터넷 명예훼손의 신고와 상담

인터넷 명예훼손의 온라인 신고

▪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범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명예훼손 상담서비스

▪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전자민원 또는 상담전화(국번없이 1377)를 통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 및 처벌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 위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며,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

▶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라고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해제조건부(解除條件附) 범죄라고도 합니다. 국가형벌권의 작용을 피해자의 의사에 매이게 하는 점에서 친고죄(親告罪)와 같으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에서 친고죄와 다릅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1

Q.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실을 퍼나르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A.글이 게시된 사정이나 정황, 글의 성격, 의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글을 그대로 복사해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역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것이 아닌 이상 문제의 글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인터넷 피해구제-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권리침해정보 심의]

1.2. 관련 법령의 개관

1.2.1. 관련 법령의 개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명예훼손의 분쟁조정,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 민·형사상의 소(訴)를 제기하기 위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및 인터넷 명예훼손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를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 행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민법」

▪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는 「민법」에 따라 가해자 등에게 그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정보의 삭제요청 등

2.1.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2.1.1.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요청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요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항).

▪ 임시조치의 기간

▸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항).

필요한 조치 내용·절차 등의 약관 명시

필요한 조치 내용·절차 등의 약관 명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5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감경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감경 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6항).

2.2. 임의의 임시조치

2.2.1. 임의의 임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 및 제44조의2제2항 후단).

▪ 임의의 임시조치의 기간

▹ 임의의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 및 제44조의2제4항 후단).

필요한 조치 내용·절차 등의 약관 명시

필요한 조치 내용·절차 등의 약관 명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 및 제44조의2제5항).

3.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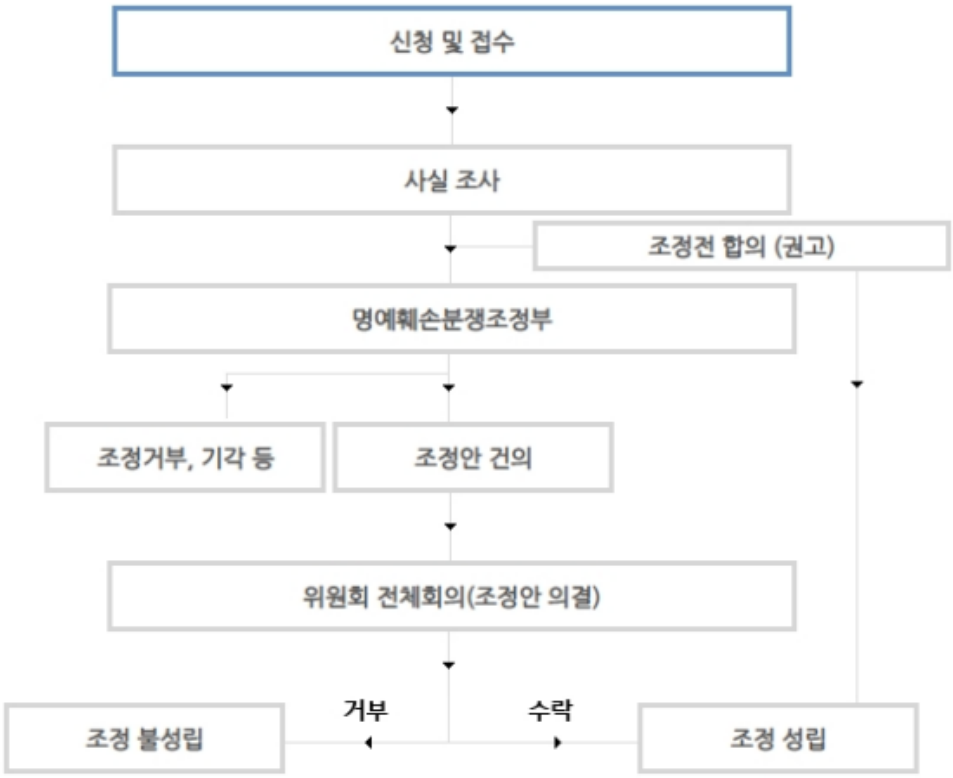
3.1. 분쟁조정신청

3.1.1. 조정신청 등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시 처리 절차

절차도

▪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다음의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신청조회-명예훼손 분쟁조정).



조정신청 등

조정신청

▪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조정신청 방법

▪ 조정의 신청은 서면, 구술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본문).

※ “온라인 신청”이란 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쟁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호).

▹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하고(「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단서), 구술신청의 경우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사무처 담당 직원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

▪ 조정신청서의 제출

▹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신청서(이하 "조정신청서"라 함)를 관련 증거자료 등과 함께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본문).

※ 다만, 온라인 신청은 조정신청서의 제출로 보며, 이 경우 신청인은 관련 증거자료 등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단서).

※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온라인 신청을 하시려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전자민원-인터넷피해구제센터-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 를 클릭하세요.

법정대리인에 의한 조정신청 등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5항).

▹ "미성년자(未成年者)"는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대리인의 선임

▪ 당사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정위임장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1. 변호사
2.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자로서 그 자가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4.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5. 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승인을 받은 자

▪ 위 1.의 대리인은 변호사 자격을, 2. 및 3.의 대리인은 대리인을 선임한 당사자와의 관계를 위원회에 소명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대표당사자

▪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해당 사건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로 선임하거나 선임된 대표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대표당사자의 선임 또는 변경의 사실은 다수의 당사자가 직접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 심의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을 진행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해 대표당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

▪ 대표당사자는 이를 선임한 당사자를 위해 조정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5항 본문).

▹ 다만, 조정신청의 취하, 피신청인과의 조정전 합의 또는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5항 단서).

3.1.2. 조정신청의 접수 등

조정신청의 접수

조정신청의 보류 및 거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증거자료 미첨부 등을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6항).

조정신청의 접수 및 통지

▪ 심의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받는 경우에 신청인에 대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 “신청인”이란 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을 말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 조정신청을 접수받은 심의위원회는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피신청인 성명 또는 ID(닉네임) 등을 기재한 접수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함. 이하 같음)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서 사본을 함께 발송(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함. 이하 같음)하되, 신청인의 주소(세부 주소에 한함),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 “당사자”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말하고(「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호),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피신청인의 변경과 조정신청의 보완

피신청인의 변경

▪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명백히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 피신청인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위의 변경요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봅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 위에 따라 피신청인이 변경된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를 당사자 및 변경전의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 이하 같음)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조정신청의 보완

▪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조정신청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신청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문서, 전자우편, 전화, 구술 또는 분쟁조정업무시스템 등을 통해 보완을 요구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기타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료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위의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 조정신청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분쟁의 조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 위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항).

사건의 분할·병합

사건의 분할·병합

▪ 심의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수인 사건의 경우이거나 사건의 성질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분할(分割) 또는 병합(倂合)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 사건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

▪ 사건을 분할 또는 병합한 경우 처리기간은 사건이 분할된 날 또는 마지막으로 병합된 날부터 새로 기산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 “사건”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신청인이 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안을 말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호).

조정신청의 취하 및 각하

조정신청의 취하

▪ 신청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조정신청취하서의 제출
- 조정기일에 구술
-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한 신청취하의 의사표시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를 통한 의사표시

▪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하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 심의위원회는 조정신청취하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3항).

조정신청의 각하

▪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조정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4항).

- 심의위원회에 조정이 계류 중이거나 이미 조정절차를 거친 사건인 경우[다만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재조정신청)에 따른 재조정신청의 경우는 그렇지 않음]

-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 별도의 법적 구제수단이 취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피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등으로 접수사실통지, 조정기일통지 등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 피신청인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했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통지의 도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2. 조정전 합의

3.2.1. 조정전 합의권고 등

조정전 합의의 권고

조정전 합의의 권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참조 및 제13조제1항).

조정전 합의서의 작성과 사건의 종결

조정전 합의서의 작성과 사건의 종결

▪ 당사자가 조정전 합의 권고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

▪ 심의위원회는 위에 따라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수락서를 제출한 때 조정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즉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정전 합의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

▪ 조정전 합의권고에 의해 종결된 사건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

3.3. 분쟁의 조정

3.3.1. 조정의 진행 등

사실조사 등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다음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 당사자의 진술 청취
-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
-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

- 사건현장 답사, 영상 촬영 등 그 밖의 적정한 방법

▪ 심의위원회는 사실 확인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증거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공평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조정기일 등의 통보

▪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의견청취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 해당 사건의 기일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을 구두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 심의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

조정의 진행

▪ 출석한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서 또는 구술로써 진술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 심의위원회의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 당사자만의 출석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자료 등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 위의 경우에 불출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항).

▪ 심의위원회는 조정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사건번호, 신청인의 성명,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ID(닉네임), 출석대상자의 성명 및 자격, 다음 조정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4항).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정의 거부

▪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 그 밖에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함)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거나, 실질적으로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조정의 중지

▪ 심의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사건의 이첩

사건의 이첩

▪ 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의 경우 다른 기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첩의 이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회송하고 해당기관으로 이첩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조정신청의 기각

신청의 기각

▪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 사건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 권리침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분쟁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조정부의 구성

▪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부를 둡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제1항).

조정부의 직무

▪ 조정부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1.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심사 및 제공여부 결정
2.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절차 진행 및 조정안 건의
3. 1 및 2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심의위원회규칙 제·개정에 대한 제안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조정위원의 제척(除斥)

> ▶ “제척”이란 구체적인 사건의 심의·의결에 있어서 조정위원이 불공평한 심의·의결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를 유형적으로 규정해 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조정위원을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조정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9제1항).

√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당사자의 기피(忌避)신청

▶ "기피 신청"이란 제척원인이 있는 조정위원이 제척되지 않고 그대로 심의·의결을 하게 되거나 조정위원에게 제척원인은 없으나 불공평한 심의·의결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 조정위원을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시킬 수 있도록 신청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것을 기피라 하고 제척제도를 보충하는 제도입니다.

▹ 당사자는 조정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9제2항).

▪ 조정위원의 회피(回避)

▶ "회피"란 조정위원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입니다.

▹ 조정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9제3항).

▪ 정족수 계산에의 불포함

▹ 제척·기피 및 회피의 사유로 심의·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정위원은 조정부 회의의 개의 및 의결의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항).

조정부 회의

▪ 조정부 회의의 소집

▹ 조정부의 회의는 조정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조정부의 장이 소집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0제7항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 회의의 비공개

▹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0제5항 본문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본문).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0제5항 단서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단서).

▪ 조정부 회의의 개의 및 의결

▹ 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0제3항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조정부는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비밀유지 등

▪ 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5호).

▪ 위반 시 제재

▸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제5호).

3.3.2. 조정안의 작성과 조정의 성립 등

조정안의 건의 및 수정

조정안의 건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 또는 조정전 합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함)에 회부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 조정부는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심의위원회에 건의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단서).

▪ 심의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조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사건번호, 신청인의 성명,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ID(닉네임),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조정기간 연장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

유용한 법령정보 2

Q. 조정의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조정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것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 금전적 손해배상, 공개적인 사과 등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합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인터넷 피해구제- 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분쟁조정]

조정안의 수정

▪ 조정부가 건의한 조정안이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는 조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4항).

조정안의 의결

조정안의 작성 및 제시

▪ 심의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 사건번호
- 사건명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조정결정 사항
- 조정결정 이유
- 작성 연월일

▪ 심의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2항).

조정의 성립 및 불성립

조정의 성립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수락서 제출은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수락서를 제출한 때에 심의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 양 당사자 모두가 조정수락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

조정의 불성립

▪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수락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 심의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3

Q. 조정신청을 했는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절차가 모두 진행되어 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전달되었는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데, 이때에는 당연히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인터넷 피해구제- 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분쟁조정]

조정의 효력

조정의 효력

▪ 명예훼손 분쟁조정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목적으로 하며, 민·형사상 사법절차와 같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조정(조정전 합의) 성립 시 민사상 합의에 준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인터넷

피해구제-신청조회-명예훼손 분쟁조정).

재조정신청

재조정신청

▪ 당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 신청서에 재조정신청이유를 작성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당초 조정신청을 할 때에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 조정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 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정부가 판단하지 않은 경우
- 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 재조정신청은 당사자가 조정결정 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

▪ 심의위원회는 위의 기간을 경과한 재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각하(却下)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4항).

▪ 재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의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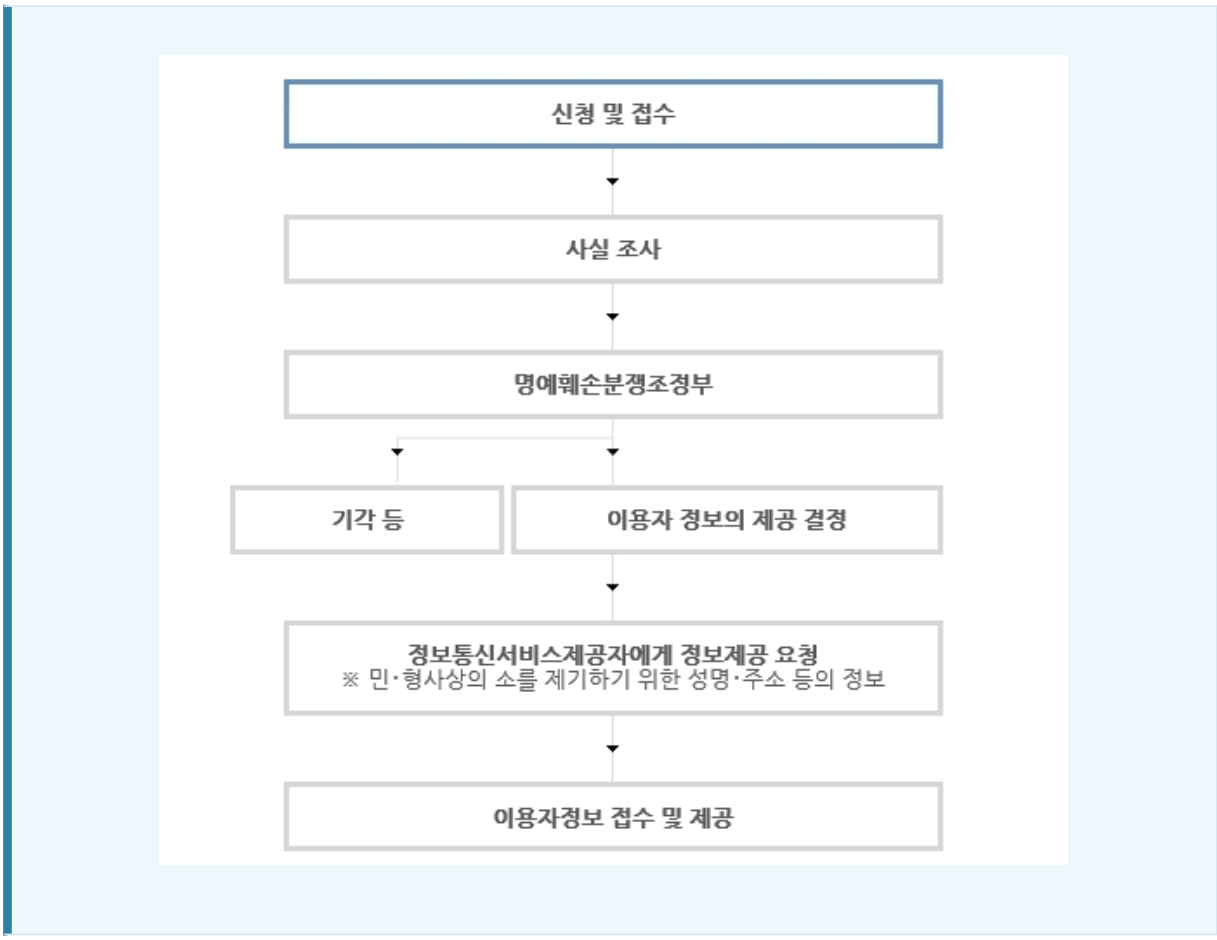
4.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및 소의 제기

4.1.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4.1.1.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처리 절차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인터넷피해구제센터)-신청·조회-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정보제공청구서의 제출 등

▶ 정보제공청구서의 제출

▪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訴)를 제기하기 위해 침해사실을 소명(疏明)하여 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함)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성명
- 주소
- 그 밖에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해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게재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소명자료와 함께 조정부에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본문).

▹ 청구인의 성명·주소·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또는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제공청구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것은 정보제공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단서).

▪ 구술로써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무처 담당 직원이 정보제공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

침해사실의 소명과 정보제공청구의 보완

▪ 침해 사실의 소명

▹ 이용자 정보제공청구를 하는 자는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당한 사실을 조정부에 소명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 정보제공청구의 보완

▹ 조정부는 소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문서, 전자우편, 전화, 구술 또는 분쟁조정업무시스템 등을 통하여 보완을 요구하되,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

√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정보제공청구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료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정부는 청구인이 위의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제3항).

▹ 위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정보제공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제4항).

▹ 위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제공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법정대리인에 의한 정보제공청구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및 정보제공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제3항 및 제5조제5항).

▹ “미성년자(未成年者)”는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대리인의 선임

▪ 당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정보제공청구위임장(「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 변호사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자로서 그 자가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 심의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승인을 받은 자

정보제공청구의 각하

정보제공청구의 각하

▪ 접수된 이용자 정보제공청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결정으로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조정부가 이미 정보제공요청여부에 대해 결정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조정부의 판단으로 정보제공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제공 여부의 결정 및 결과의 통지 등

이용자 정보제공 여부의 결정 및 결과의 통지

▪ 조정부는 청구인으로부터 이용자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 이용자 의견 청취

- 조정부는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2항).

▪ 청구인 의견 진술

- 조정부는 이용자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2항).

▪ 정보제공 여부의 결정 및 결정통지서의 발송

- 조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제공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정부는 청구인에게 사건번호,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결정사항, 결정이유를 기재한 결정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제1항).

※ 위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조정부는 청구인에게 사건번호,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 기간연장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제3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이용자 정보제공 요청

▪ 조정부는 이용자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 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에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사건번호, 청구인의 성명,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명칭, 청구정보를 기재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제2항).

청구인에 대한 정보제공통지서의 발송

▪ 조정부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은 경우에 정보제공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건번호, 청구인의 성명, 청구정보, 제공정보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제4항).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실의 통지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실의 통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3항).

▪ 위반 시 제재

▹ 제공받은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제4호).

관련 자료의 보관

관련 자료의 보관

▪ 조정부는 이용자정보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2항).

분쟁조정절차의 준용(準用)

분쟁조정절차의 준용

▪ 정보제공청구와 정보제공청구절차에 관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장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장(분쟁조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조정”은 “정보제공”으로 보며, “신청”은 “청구”로 봅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4.2. 민 · 형사상 소(訴)의 제기

4.2.1. 고소 · 고발

고소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그 밖의 일정한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고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 "피의자"란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사람을 말합니다. 피의자가 기소된 후는 '피고인'이라고 불립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 수인(數人)의 고소권자

  -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懈怠)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1조).

유용한 법령정보 4

Q.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가요?
A.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이 경우 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을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검찰청-온라인민원실-자주 묻는 질문]

고소의 제한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의 방식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

- 고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서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고소의 취소

-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準用)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 대리인의 고소 취소

  -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 고소 취소의 방식

  -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및 제237조제1항).
  -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및 제237조제2항).

- 고소 취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 고소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고, 구술에 의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및 제237조).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의 처벌

-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 ※ 고소사건의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하시려면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고발

고발할 수 있는 사람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고발의 제한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5조 및 제224조).

고발의 방식

-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
-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고발의 취소

- 고발 취소의 방식
  - 고발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및 제237조제1항).
  -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및 제237조제2항).
- 고발의 취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 고발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고, 구술에 의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및 제237조).

> ※ 고발사건의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하시려면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4.2.2.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청구

- 고의 또는 과실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1항).

손해액의 범위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 유통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을 말함)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2항).

-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위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3항)
  -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 정보 유통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 ※ “게재자”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3).

▪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4항).

-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원고 외의 자가 입은 피해 포함) 규모 및 정도
-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으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의 내용 및 정도, 그 유통의 기간·횟수, 전파의 정도
-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 해당 정보가 이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로 판명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 해당 정보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 해당 정보의 본문 또는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내용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하였는지 여부
-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 가해자의 재산상태
- 가해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 법원은 위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2항).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감독자의 책임

▪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민법」 제753조).

▪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책임

- 위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755조제1항).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그 미성년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5조제2항).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1항).

공동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불법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2항).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제760조제3항).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消滅時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및 제2항).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제3항).

> ※ 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한 민사소송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절차안내-민사 >에서 참고하세요.